|  |  |  |
| --- | --- | --- |
| **외국인투자기업 주주권 출자와 관련한 상무부의 잠정규정**  상무부 령[2012] 제8호  《외국인투자기업 주주권 출자와 관련한 상무부의 잠정규정》이 2012년 8월 24일 상무부 제68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德銘  2012년 9월 21일  **제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 출자행위를 규율하고 투자편의를 제공하여 외국투자자의 재중국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 법률,《회사법》및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 및 경외의 투자자(이하 주주권 출자인이라 함)가 그가 소지하고 있는 중국 경내기업과 경외기업(이하 지분보유기업이라 함)의 주주권으로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함)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하기 기업들을 포함한다.  (1) 신규 설립형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2) 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를 통해 기업의 성격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를 통해 그 지분구조를 변경.  상기에서 기업이라 함은 중국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나 유한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심사인가기관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또는 지방 상무부서를 가리킨다.  투자자가 주주권으로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심사인가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에서 인가하는 이외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심사인가기관이라 함)에서 심사 인가한다.  **제4조** 투자하는 주주권은 그 권리소속이 명확하고 완벽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분보유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주주권으로는 출자를 하지 못한다.  (1) 지분보유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전액 완납하지 못한 경우  (2) 주주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3) 주주권이 법에 의해 동결된 경우  (4) 지분보유기업 정관(계약)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5)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 연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에 통과되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인 경우  (6) 부동산기업, 외국인투자지주회사, 외국인투자창업(주주권)투자기업의 주주권인 경우  (7)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서 주주권 양도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8)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5조**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 투자대상기업과 지분보유기업,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적 지분보유기업은《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및 기타 외국인투자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권 출자를 신고하기 전에 관련 자산 또는 업무를 분리시키거나 또는 주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국내외 투자자가 주주권 출자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관리를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출자로 하는 주주권은 합법적으로 설립한 국내 평가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주주권 출자인은 주주권 평가를 토대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나 기타 투자자와 협상하여 주주권 가액과 주주권 출자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주주권 가액이라 함은 상기 각 측에서 주주권 평가를 토대로 공동으로 인정한 주주권 출자 거래가격을 가리키며, 주주권 출자금액이라 함은 주주권 가액에 투자대상기업의 등록자금 부분을 가산한 것으로서 주주권 출자금액이 주주권 평가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주권 평가가격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주권 가액을 인수거래액에 계상한다.  **제8조** 투자대상기업 주주 전원의 주주권 출자금액과 비 통화재산으로 가치를 평가한 기타 출자금액의 합이 그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투자대상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투자총액은《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정규정》에 따라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의 투자대상기업 등록자본금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제10조** 투자자가 주주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기업이 심사인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주권 출자신청서와 주주권 출자합의서  (2) 출자 주주권에 대한 주주권 출자인의 합법적 권리증명서  (3) 지분보유기업의《기업법인 영업허가증》(복사본)  (4)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증서》와 그 복사본, 외국인투자기업 연합연차검사 통과 증명서  (5) 평가기구에서 발급한 주주권 평가보고서  (6) 이 규정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제시한 변호사사무소 및 그 위임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7)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기타서류  (8)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가 주주권을 양도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인가서류  (9) 심사인가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11조** 투자대상기업 심사인가기관은 법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인가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비고란에󰡒주주권 출자금 미납󰡓이라 명기)를 발급한다.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고 투자대상기업과 부동한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심사인가기관은 지분보유기업 소재지 성급 심사인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분보유기업 소재지 성급 심사인가기관은 의견 수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주주권 출자가 투자대상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분보유기업이 비 외국투자기업으로 된 경우 지분보유기업은 투자대상기업의 주석을 단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잠정규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비안(備案)수속 또는 인가수속을 신청하여 출자 주주권의 소유자를 투자대상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13조** 주주권 출자가 투자대상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된 경우에는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에도 지분보유기업의 주주 중에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지주회사, 외국인투자창업(주주권)투자기업 또는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합명회사)가 있는 경우, 당해 지분보유기업은 투자대상기업의 주석을 단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주주권 변경 관련 몇 가지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심사인가기관에 신청하여 출자 주주권의 소유자를 투자대상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 지분보유기업의 주주 중에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지주회사, 외국인투자창업(주주권)투자기업 또는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합명기업)가 없는 경우 당해 지분보유기업은 투자대상기업의 주석을 단《외국투자기업 인가증서》를 지참하고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주주권 변경 관련 약간규정》과《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잠정규정》에 따라 관련 인가수속이나 비안(備案)수속을 밟고 심사인가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14조** 지분보유기업은 상기 변경수속을 필한 후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상, 세무, 세관, 외환관리 등 관련부서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출자 주주권이 이미 증권등록결산기구에 등록된 경우 지분보유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산기구에서 주주권 양도 및 명의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지분보유기업이 상기 변경을 필한 후 투자대상기업은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심사인가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비고란에󰡒주주권출자 교부 필󰡓이라 명기)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권변경 설명서  (2)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권 변경 후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및 복사본  (3) 의법 설립한 자금사정기구의 주주권 출자금 납부확인증명서  (4) 지분보유기업이 주주권을 변경한 후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와 복사본을 별도 제출  (5)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지만 그 경영범위가《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제한부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성급 심사인가기관의 외국인투자기업 경내 재투자 인가서류를 별도 제출.  **제16조** 경내 상장회사의 주주권 출자는 국가 증권감독관리, 증권거래, 증권등록결제 등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권을 대가로 경내 상장회사의 주식 비공개발행이나 합의양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투자 관리방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상무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인가서한을 발급하며, 지분보유기업은 이 규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인가서한에 의거하여 지분보유기업의 비안, 심사인가 등 변경수속과 비공개발행 또는 합의 양도수속을 할 수 있다. 거래를 완료한 후 상장회사는 상무부에서《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아울러 비준증서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한다.  **제17조** 주주권 출자 투자대상기업의 심사인가기관은 인가서류의 부본을 투자대상기업 소재지 공상부서, 세무부서, 세관, 외환관리부서에 송달해야 하며, 주주권 출자인이 경내 투자자인 경우에는 부본을 주주권 출자인 소재지의 세무주관부서에 송달해야 한다.  **제18조** 투자대상기업의 외채등기 또는 수입면세 한도액 수속을 할 때에는 주주권 출자부분을 공제한 투자대사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따라 확정한 투자총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제19조** 주주권 출자는 국가 조세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주주권 출자가 기업의 국유재산권과 상장회사의 국유주주권 관리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자금사정기구에서 자금사정증명서를 발급할 때 투자대사기업 소재지의 외환관리부서를 통해 자금조회를 해야 한다.  **제22조** 주주권 출자가《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안전 심사제도 구축과 관련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관련 상황과 관계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인수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주주권 출자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외국인지주회사와 관련되는 주주권 투자는 외국인투자지주회사 설립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경내 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으로 내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이 규정 제4조의 출자조건과 관련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5조**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의 주주권을 대가로 여타 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재기업의 주주권을 환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주주권 출자조건, 주주권 평가 등 관련규정을 참조하는 동시에《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주주권 변경 몇 가지 규정》,《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 관련규정》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 타이완, 홍콩, 마카오 교포 투자기업의 주주권 출자행위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8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商务部关于涉及外商投资企业**  **股权出资的暂行规定**  商务部令2012年第8号  　　《商务部关于涉及外商投资企业股权出资的暂行规定》已经2012年8月24日商务部第68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0月22日起施行。  部长：陈德铭  2012年 9月21日  **第一条** 为规范涉及外商投资企业的股权出资行为，提高投资便利化水平，促进外国投资者来华投资，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律、《公司法》以及相关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境内外投资者（以下统称股权出资人）以其持有的中国境内企业（以下统称股权企业）的股权作为出资，设立及变更外商投资企业（以下统称被投资企业）的行为适用本规定，包括：  　　（一）以新设公司形式设立外商投资企业；  　　（二）增资使非外商投资企业变更为外商投资企业；  　　（三）增资使外商投资企业股权发生变更。  　　以上所称企业是指在中国境内依法设立的有限责任公司或股份有限公司。  **第三条** 本规定所称审批机关为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或地方商务主管部门。  　　投资者以股权出资设立及变更外商投资企业，除按照有关外商投资审批管理规定由商务部批准的之外，其余由被投资企业所在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的商务主管部门（以下简称省级审批机关）负责批准。  **第四条** 用作出资的股权应当权属清晰、权能完整，依法可以转让；股  权企业为外商投资企业的，该企业应依法批准设立，符合外商投资产业政策。  　　属于以下情形的，股权不得用于出资：  　　（一）股权企业的注册资本未缴足；  　　（二）股权已被设立质权；  　　（三）股权已被依法冻结；  　　（四）股权企业章程（合同）约定不得转让的股权；  　　（五）未按规定参加或未通过上一年度外商投资企业联合年检的外商投资企业的股权；  　　（六）房地产企业、外商投资性公司、外商投资创业（股权）投资企业的股权；  　　（七）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股权转让应当报经批准而未经批准；  　　（八）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不得转让的其他情形。  **第五条** 股权出资后，被投资企业和股权企业及其直接或间接持股企业应符合《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以及其他外商投资相关规定；不符合有关规定的，应在申报股权出资之前剥离相关资产、业务或转让股权。境内外投资者不得以股权出资方式规避外商投资管理。  **第六条** 用作出资的股权应当经依法设立的境内评估机构评估。  **第七条** 股权出资人与被投资企业的股东或其他投资者可在股权评估的基础上协商确定股权作价金额、股权出资金额。  　　股权作价金额是指以上各方在股权评估基础上共同认定的用于出资股权的交易作价，股权出资金额是指股权作价金额中计入被投资企业注册资本的部分，股权出资金额不得高于股权评估值。  　　对于以股权作价认购被投资企业增资的，股权作价金额计入并购交易额。  **第八条** 被投资企业全体股东的股权出资金额和以其他非货币财产作价出资金额之和不得高于其注册资本的70%。  **第九条** 被投资企业为有限责任公司的，其投资总额应根据《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中外合资经营企业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的暂行规定》，按照股权出资后被投资企业的注册资本进行确定。  **第十条** 投资者以股权出资，应由投资者或被投资企业向审批机关提出申请，提交以下文件：  　　（一）股权出资申请及股权出资协议；  　　（二）股权出资人合法持有用作出资股权的证明；  　　（三）股权企业《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四）股权企业为外商投资企业的，应提交《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及复印件，通过外商投资企业联合年检的相关证明；  　　（五）评估机构的股权评估报告；  　　（六）律师事务所及其委派的律师就本规定第四条、第五条内容出具的法律意见书；  　　（七）依照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和规章应当报送的其他关于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的文件；  　　（八）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股权企业股东转让股权须报经批准的，需提交相关批准文件；  　　（九）审批机关要求提交的其他文件。  **第十一条** 被投资企业的审批机关依法决定批准或不予批准。予以批准的，由审批机关颁发或换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在备注栏加注“股权出资未缴付”）。  　　股权企业为外商投资企业，且与被投资企业分由不同审批机关批准的，被投资企业的审批机关应征求股权企业所在地省级审批机关意见，股权企业所在地省级审批机关应在收到征求意见函后20个工作日内回复意见；逾期不答复的，视为同意。  **第十二条** 股权出资经被投资企业的审批机关批准后，股权企业为非外商投资企业的，股权企业应凭被投资企业加注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按照《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及其他有关规定办理备案或审批手续，申请将用作出资的股权的持有人变更为被投资企业。  **第十三条** 股权出资经被投资企业的审批机关批准后，股权企业为外商投资企业的，按以下情形办理：  　　股权出资后，若股权企业股东中仍有外国投资者（含外商投资性公司、外商投资创业（股权）投资企业或以投资为主要业务的外商投资合伙企业），该股权企业应凭被投资企业加注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按照《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向具有相应权限的审批机关申请将用作出资的股权的持有人变更为被投资企业。  　　股权出资后，若股权企业股东中无外国投资者（含外商投资性公司、外商投资创业（股权）投资企业或以投资为主要业务的外商投资合伙企业），该股权企业应凭被投资企业加注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按照《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和《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办理有关审批或备案手续，向审批机关缴销或变更其《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第十四条** 股权企业在完成上述变更后，应按照国家有关规定向所在地工商、税务、海关、外汇管理等有关部门办理变更登记。  　　用作出资的股权已在证券登记结算机构登记的，股权企业应当按照有关规定向证券交易所和证券登记结算机构办理股份转让和过户登记手续。  **第十五条** 股权企业完成上述变更后，被投资企业应凭以下文件向审批机关申请换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在备注栏加注“股权出资已缴付”字样）。  　　（一）股权企业股权变更的说明；  　　（二）股权企业股权变更后的《企业法人营业执照》及复印件；  　　（三）经依法设立的验资机构出具的股权出资验资证明；  　　（四）股权企业在股权变更后仍为外商投资企业的，还应提交变更后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及复印件；  　　（五）股权企业为非外商投资企业但其经营范围涉及《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限制类领域的，还应提交省级审批机关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的批复文件。  **第十六条** 涉及境内上市公司的股权出资应符合国家证券监管、证券交易、证券登记结算等有关规定。  　　外国投资者以股权企业的股权作为对价参与境内上市公司定向发行或协议转让股份，应同时适用《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商务部按照有关规定出具原则批复函，股权企业可按照本规定第十二条、第十三条的规定，凭原则批复函办理股权企业的备案、审批等变更手续，以及办理定向发行或协议转让手续。在交易完成后，上市公司到商务部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凭该批准证书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  **第十七条** 股权出资被投资企业的审批机关应将批准文件分别抄送被投资企业所在地工商、税务、海关、外汇等部门；股权出资人为境内投资者的，应抄送股权出资人所在地的税务主管部门。  **第十八条** 在办理被投资企业外债登记和进口免税额度时，应以被投资企业扣除股权出资部分的注册资本所确定的投资总额进行核定。  **第十九条** 股权出资应当符合国家有关税收管理的规定。  **第二十条** 股权出资涉及企业国有产权和上市公司国有股权管理事项的，应当遵守国有资产管理的相关规定。  **第二十一条** 验资机构在出具验资证明时，应向被投资企业所在地外汇管理部门进行验资询证。  **第二十二条** 股权出资涉及《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规定的有关情形的，应由外国投资者按照相关规定提出并购安全审查申请。  　　股权出资属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情形的，除适用本规定外，还应遵守《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第二十三条** 涉及外商投资性公司的股权出资应符合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的相关规定。  **第二十四条** 境内投资者以外商投资企业的股权向内资企业出资的，应符合本规定第四条关于股权出资条件的规定。  **第二十五条** 外国投资者以境内企业的股权作为对价换取其他投资者持有的境内企业股权，应参照本规定关于股权出资条件、股权评估等有关规定，并遵守《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等规定。  **第二十六条** 涉及台港澳侨投资企业的股权出资行为参照本规定管理。  **第二十七条** 本规定由商务部负责解释。  **第二十八条** 本规定自2012年10 月22日起实施。 |